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1. 20 선고 2022나61623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한국산업은행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총정
담당변호사 김시주, 이진욱

피고, 항소인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
담당변호사 문혜경

변 론 종 결 2022. 12. 16.

판 결 선 고 2023. 1. 20.

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7. 12. 선고 2021가단231561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피고는 원고에게 52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항소취지]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제1심판결 제4쪽 11번째 줄부터 17번째 줄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위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『 (2) 판단

민법 제151조 제3항에 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”라고 규정되어 있다.

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해지의 조건 중 일부였던 ‘지상권 설정 의무’(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중 2.②항)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당시부터 이행불능인 불능조건이었다면,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중 2항에 규정된 조건이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당시에 이미 모두 충족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위 2항에 규정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위 연대보증약정이 해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. 즉 앞서 본 규정 내지 그 유추적용에 따라 위 연대보증약정 해지의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위 해지의 조건 없이 위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.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관하여 그 해지 조건이 충족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.

뿐만 아니라 을 제9, 17, 18, 3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, 당시 증기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C회사였고 지상권 설정을 위해서는 C회사의 의사가 결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

C회사가 지상권 설정에 부정적이었다는 사실까지는 인정될 수 있으나, 나아가 위 ‘지상권 설정 의무’가 확정적으로 이행불능이었다거나 당사자들 모두가 이를 인식·양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이 점에서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오연정, 판사 권순호, 판사 강희석